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72호	2012. 1. 30.(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123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6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131호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 따른 공고----- 69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15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1. 2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감사전담기구 설치
- 법 개정 등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 개정

####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신설 및 기타 법 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 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40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국장 및 과장의 직급등)”을 “(실장·관·국장 및 과장의 직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국장의”를 “실장·관·국장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국의 설치)”를 “(실·관·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획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을 “기획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4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2.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제6조제2항에 제8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제11호를 삭제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관리

### 90.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제26호와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7호와 제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7. 공간정보(GIS) 총괄 운영

#### 58.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신설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국장·과장”을 “실·관·국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실·과의 사무분장)”을 “(실·관·과의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동장의 직급) 등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검암경서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석남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좌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가좌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검단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신설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서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과 제9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 구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기획홍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심사분석</li> <li>3. 구정조정위원회 운영</li> <li>4. 지시사항 처리 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등)</li> <li>5. 공무원 관내외 출장·통제</li> <li>6.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li> <li>7. 기구 및 정원조정</li> <li>8. 조직 및 인력진단</li> <li>9. 사무이양 및 위임전결</li> <li>10. 주간, 월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li> <li>11. 구의회 운영 지원</li> <li>12.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무</li> <li>1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li> <li>14. 의회운영상황 동향 보고</li> <li>15.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li> <li>16. 행정자료실 운영</li> <li>17. 구정 특수시책 개발 및 추진</li> <li>18. 구정업무 연구 연찬</li> <li>19. 구민아이디어 제안 접수 및 개발</li> <li>20. 구정시책 발굴 및 평가</li> <li>21. 구정 청사진개발 및 비전제시</li> <li>22.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총괄 및 확인평가</li> <li>23.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li> <li>24. 해외사절단 파견등 계획 수립</li> <li>25. 외국 또는 외국기관과의 섭외</li> <li>26. 국제자매도시 협의회 운영</li> <li>2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li> <li>28.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li> <li>29. 총괄 기금 관리</li> <li>30. 세출예산 연간배정계획 수립</li> <li>31.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재배정</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기획홍보실	32. 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33. 재원조정교부금 관리 34. 지방채, 일시차입금, 조상충용충담금, 채무부담행위 조정 35.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사항 36. 국고보조금 신청 37. 세입·세출 실행예산 편성 38. 예비비 지출 및 승인요구 39. 지방채 발행 및 승인요구 40. 명시이월사업 승인요구 41. 교육예산 지원 승인요구 42. 세출예산 이체 43. 세출예산 이용 44. 세출예산 전용 45. 세입세출예산 성립전 경비 사용 46.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47. 기금출연 및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48. 구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9.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의 제·개정, 폐지 및 심사 공포 50. 고시, 공고, 예규, 훈령등 중요문서의 심사 51.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연구 52.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53.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54.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 간행 55.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5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 5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59.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60. 공탁금 지출 및 회수 61.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62.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63.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의 통제 64. 통계의 분석 공포 65.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간행물 발간 66. 도·소매인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67. 인구주택 총조사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기획홍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8.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li> <li>69. 인천사회지표 통계조사</li> <li>70. 사업체기초 통계조사</li> <li>71.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자료조사</li> <li>72. 광공업 통계조사</li> <li>73. 산업총조사</li> <li>74. 고용구조 통계조사</li> <li>75. 기타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li> <li>76.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삭제)</li> <li>77. 감사 및 결과조치(삭제)</li> <li>78.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삭제)</li> <li>79.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삭제)</li> <li>80. 청원 진정서 처리(삭제)</li> <li>8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삭제)</li> <li>82. 사법기관 통보 범죄공무원 처리(삭제)</li> <li>83. 신문·방송보도사항 조사처리(삭제)</li> <li>84. 취약업무에 관한 특별감사(삭제)</li> <li>85. 감사동향 보고(삭제)</li> <li>86. 사무인계인수 사항 확인(삭제)</li> <li>87.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삭제)</li> <li>88. 공직기강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삭제)</li> <li>89.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삭제)</li> <li>90. 회계에 관한 실지검사(삭제)</li> <li>91.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검열 및 감사(삭제)</li> <li>92. 중앙부처 이첩 민원 처리(삭제)</li> <li>93. 통신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94. FAX 시설운영 유지관리</li> <li>95. 행정 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li> <li>96. 통신보안 관리</li> <li>97.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등)의 통합관리</li> <li>98. 구분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개발계획 수립 시행</li> <li>99. 통신기술 교육 훈련</li> <li>100.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li> <li>101. 기타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li> <li>102. 행정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li> <li>103. 행정 전산화 시설 운영, 유지관리(전산장비, PC)</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기획홍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4.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파일서버 운영관리</li> <li>105.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li> <li>106.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교육 및 점검</li> <li>107. 네트워크 운영관리</li> <li>108.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운영관리</li> <li>109. 구분청 및 산하기관 도메인 유지 관리</li> <li>110. 전산교육(직원 및 구민대상)</li> <li>111. 그룹웨어 운영 관리</li> <li>11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li> <li>113. 인터넷 웹 서버 운영 관리</li> <li>114. 인터넷 네트워크 보안 관리</li> <li>115.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li> <li>116. 기타 전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li> <li>117.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추진</li> <li>118. 지역특화사업 추진</li> <li>119.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li> <li>120.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li> <li>121. 시설관리공단 총괄관리 및 지휘감독</li> <li>12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li> <li>123. 국·시·구청시책의 홍보</li> <li>124.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li> <li>125. 자유수호 주민계도</li> <li>126.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li> <li>127. 구보(구정신문) 발간·배부</li> <li>128.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li> <li>129. 기타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li> <li>130. CCTV카메라 설치·운영(신설 2011.06.15)</li> </ul>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신설)</li> <li>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신설)</li> <li>3. 비위공무원 처리 및 소청에 관한 사항(신설)</li> <li>4.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신설)</li> <li>5. 청원진정서 처리(다수인 민원 포함)(신설)</li> <li>6.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신설)</li> <li>7. 사무인수인계사항 확인(신설)</li> <li>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신설)</li> <li>9. 공직기강쇄신 추진에 관한 감사(신설)</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청렴도 관련 업무(신설)</li> <li>11.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신설)</li> <li>12. 회계에 대한 실지 감사(신설)</li> <li>13.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신설)</li> <li>14.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신설)</li> <li>15.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및 조치(신설)</li> </ul>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안관리 및 청중단속</li> <li>2.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li> <li>3. 공무원 의료보험 업무</li> <li>4. 방위협의회 운영</li> <li>5. 직장복지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li> <li>6. 공무원 해외여행</li> <li>7. 직원공제회 운영</li> <li>8. 청사경비 및 방화관리</li> <li>9. 직장민방위 및 자체예비군 운영 관리</li> <li>10.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li> <li>11. 민간에 대한 포상 및 표창</li> <li>12. 공무원 건강진단 및 복리후생</li> <li>13. 수입증지 출납</li> <li>14. 청사환경 및 회의실 운영 관리</li> <li>15. 구기등에 관한 사무</li> <li>16. 구분청 직원복무 및 휴가</li> <li>17. 직원월례조회 및 시무식·종무식</li> <li>18. 청내 사무실 조정</li> <li>19. 공무원 인사(구소속공무원 임용권)</li> <li>20.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li> <li>21.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li> <li>22. 신원조사 의뢰</li> <li>23. 공무원증 발급</li> <li>24. 소·동 행정지도 감독,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li> <li>25. 동의 명칭, 위치, 구역의 변경(행정구역 조정)</li> <li>26. 시책업무 추진</li> <li>27. 공무원 교육</li> <li>28. 무기계약근로자 관리</li> <li>29. 반상회 운영</li> <li>30. 통·반조직 운영</li> <li>31. 여론 및 동향관리</li> <li>32. 공무원 표창</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총 무 과	33. 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34. 적십자회비 모금 35. 단체관리(바르게살기운동, 민족통일협의회) 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무 37. 공무원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개정 2011.06.15) 38.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9. 행정사 사무 업무 40.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개정 2011.06.15) 41. 선거 및 국민투표 42. 사무편람 작성 및 지도·점검 43.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조정 44.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관리 45. 새마을 정신계도 홍보 및 교육 46. 새마을 장학금 운영 47. 새마을 금고에 관한 사무(개정 2011.06.15) 48.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49. 새마을 시설물 관리·지도 5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51. <삭제 2011.06.15> 52. <삭제 2011.06.15> 53. 국민운동 관련 시책 추진 54. <삭제 2011.06.15> 55.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56. 해병전우회 관한 사항 57.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58.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59. 무기계약직 노조 지원업무 6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61.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62. 국내거소자 거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사항 63. 거주외국인 통합지원 사무(삭제) 64.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신설 2011.06.15)
인재육성과	1. 교육지원 정책개발, 기획 2. <삭제 2011.06.15> 3. <삭제 2011.06.15> 4.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5.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운영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인재육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교육행정협의회 운영</li> <li>7. 기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li> <li>8.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06.15)</li> <li>9. 외국어 특성화 사업 추진</li> <li>10.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운영</li> <li>11.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운영</li> <li>12.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li> <li>13.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li> <li>14. 평생학습 조성에 관한 사항</li> <li>15. 관내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6. 도서관 관리·운영 지원</li> <li>17. 주민정보화 교육(삭제)</li> <li>18. 외국인 지역 적응 교육 등 지원(삭제)</li> <li>19. &lt;삭제 2010.10.06&gt;</li> <li>20.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1.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li> <li>22. 청소년 공부방 설치 운영</li> <li>23. 청소년위원회 운영</li> <li>24. 청소년지도위원 운영</li> <li>25. 어려운 청소년 보호육성</li> <li>26.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li> <li>27. 청소년 활동지원</li> <li>28. 청소년 선도 및 계도</li> <li>29. 청소년단체의 지도 육성</li> <li>30. 청소년 지도 및 생활상담 지도</li> <li>31.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추진</li> <li>32. 청소년보호위반 업소 지도 및 단속</li> <li>33.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단속</li> <li>34.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li> <li>3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관리</li> <li>36.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관리</li> <li>37. 장학재단 운영 및 관리 (신설 2010.10.06)</li> </ol>
재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회계관리</li> <li>2.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li> <li>3. 공사의 도급인부와 공급운반</li> <li>4.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li> <li>5. 회계문서의 심사 및 업무지도</li> <li>6. 공사·제조·물품구입 수선의 입회</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재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지출원인행위부 정리</li> <li>8. 회계관리 직인 보관 관리</li> <li>9. 회계증빙서류 보관</li> <li>10. 출입업자 지정 및 입찰업자 지명</li> <li>11. 시유 잡종재산의 유지관리</li> <li>12.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관리</li> <li>13. 물품정수관리 및 수납계획 수립</li> <li>14. 관용차량의 정수조정 및 관리 지정</li> <li>15. 물품관리 지도 감독</li> <li>16.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유지관리</li> <li>17. 재물조사</li> <li>18.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련 국가소송업무 수행</li> <li>19. 은닉국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인 업무</li> <li>20. 차량구입 및 운영관리</li> <li>21. 차량 운전원 지도감독 및 관리</li> <li>22.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계획·발굴추진 및 민자유치</li> <li>23. 사계절썰매장 지도 감독</li> <li>24.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li> <li>2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li> <li>26. 행정선 관리</li> <li>27.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총괄</li> <li>2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li> </ol>
세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li> <li>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분석</li> <li>3. 지방세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총괄</li> <li>4. 지방세 운영평가 및 표창</li> <li>5.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li> <li>6. 지방세의 집계</li> <li>7. 지방세의 수납처리</li> <li>8.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li> <li>9. 지방세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li> <li>10. 지방세 위원회 운영</li> <li>11. 과오납 조정 및 환불</li> <li>12. 구금고 계약과 구금고 및 수납기관의 지도감독</li> <li>13. 구 자금 관리</li> <li>14. 지방세 납세 홍보 및 교육</li> <li>15.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li> <li>16.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및 독촉고지(개정 2011.06.15)</li> <li>17. 제16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개정)</li> <li>18. 제16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개정)</li> <li>19.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li> <li>20. 제16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위원회 운영(개정)</li> <li>21.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취득·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독촉고지(개정)</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 제21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개정)</li> <li>23. 제21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개정)</li> <li>24. 제21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위원회 운영(개정)</li> <li>25.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및 독촉고지(개정 2011.06.15)</li> <li>26. 세무조사 종합 기획 및 조정</li> <li>27. 제25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개정)</li> <li>28. 제25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개정)</li> <li>29. 소유사실확인원 발급</li> <li>30. 지방세 체납액 종합조정 및 통제</li> <li>31.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li> <li>32. 지방세 체납관리</li> <li>33.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 촉탁서 처리</li> <li>34.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가산금 조정</li> <li>35. 지방세 체납자 재산권 압류 및 공매처분</li> <li>36. 체납액 전산정리</li> <li>37. 관허사업 제한</li> <li>38. 채권관리 및 보고</li> <li>39.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li> <li>40. 세외수입 집계 및 수납처리</li> <li>41. 세외수입의 수입 및 결산</li> <li>42. 세외수입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li> <li>43. 수입증지 및 영수증서 관리</li> <li>44.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조정</li> <li>45.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li> </ul>
민원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원상담</li> <li>2. 공인신조 및 폐기</li> <li>3.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사용 승인</li> <li>4. 공인관리실태 지도점검</li> <li>5. &lt;삭제 2011.06.15&gt;</li> <li>6. 기록관(문서고) 운영(개정 2011.06.15)</li> <li>7. 기록관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생성, 열람)</li> <li>8. &lt;삭제 2011.06.15&gt;</li> <li>9. 민원서류(인허가, 진정, 즉결) 접수</li> <li>10.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li> <li>11. 대외전자문서 배부</li> <li>12. 전화민원 및 우편민원 접수</li> <li>13. 인터넷민원(구정에 바란다) 접수 및 배부</li> <li>14. 관인날인</li> <li>15. 문서사송</li> <li>16. 우편물 접수 및 발송</li> <li>17. 기록물 전산화 관련 업무</li> <li>18. 민원행정 개선</li> <li>19. 공무원 친절교육 등 관련업무</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민원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여권 접수, 교부 및 심사</li> <li>21.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li> <li>22. 민원관련 제도 운영</li> <li>23.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li> <li>24.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li> <li>25.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정 2011.06.15)</li> <li>26. 어디서나민원관련 업무처리</li> <li>27. G4C 민원접수처리 및 수수료 정산</li> <li>28.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관리</li> <li>29.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수수료 정산</li> <li>30. 주민등록열람</li> <li>31.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li> <li>나. 인감증명 발급</li> <li>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발급</li> <li>라.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li> <li>마.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신설 2011.06.15)</li> </ul> </li> <li>32. 호적(제적)원부 관리</li> <li>33.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수리</li> <li>3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li> <li>35. 기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li> <li>36. 인구동태</li> <li>37.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li> <li>38. 수형인명부 및 파산자 기록관리</li> <li>39. 기록물관리실태 지도점검 (신설 2011.06.15)</li> <li>40.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신설 2011.06.15)</li> <li>41.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신설 2011.06.15)</li> <li>42. 비밀문서 관리 (신설 2011.06.15)</li> </ul>
경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li> <li>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li> <li>3. 지역특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li> <li>4. &lt;삭제 2011.06.15&gt;</li> <li>5. 지방 물가지도 단속 및 동향관리 (개정 2011.06.15)</li> <li>6. 물가대책위원회 관리 및 개최</li> <li>7. &lt;삭제 2011.06.15&gt;</li> <li>8. 소비자 고발 센터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li> <li>9. &lt;삭제 2011.06.15&gt;</li> <li>10. 지역 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p>1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 시행</p> <p>12. &lt;삭제 2011.06.15&gt;</p> <p>13. &lt;삭제 2011.06.15&gt;</p> <p>14.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p> <p>15.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p> <p>16. 가격 표시제 지도단속</p> <p>17. 가격 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p> <p>18.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수립 시행</p> <p>19. 우수토산품등의 개발보급</p> <p>20. 공예품등 전문생산업체 지원</p> <p>21. 토산품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보호</p> <p>22. 제조판매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p> <p>23. 제조판매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열람 명령</p> <p>24. 농축수산행정의 종합 및 조정</p> <p>25. 농지의 소유 및 보전에 관한 업무</p> <p>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p> <p>나. 농지이용실태 조사</p> <p>다. 자경증명 발급</p> <p>라.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p> <p>마.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p> <p>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업무</p> <p>사. 농지개량에 관한 업무</p> <p>아. 농지의 이용증진을 위한 사무</p> <p>자.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관한 사무</p> <p>차.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보전</p> <p>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p> <p>26. 식량생산 세부실천계획 수립</p> <p>가. 쌀생산에 관한 대책 수립</p> <p>나. 우량 종자의 재배확대 및 공급 지도</p> <p>다. 한수해대책에 관한 업무</p> <p>라. 관개시설 및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p> <p>마. 벼재배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p> <p>바. 병충해 방제에 관한 업무</p> <p>사. 비료사용에 관한 업무</p> <p>아. 맥류, 두류, 서류, 옥수수 및 기타 잡곡의 생산장려</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p>27.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p> <p>28.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p> <p>가.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 지도</p> <p>나.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의 지원 지도</p> <p>29.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p> <p>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 지도</p> <p>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추진 지도</p> <p>다. 농산물 유통센터 및 직거래 등에 관한 사무</p> <p>30. 농자재의 수급 및 관리 지도</p> <p>가. 비료생산 및 판매업 관리</p> <p>나. 농약생산 및 판매업 관리</p> <p>다. 종자생산 및 판매업 관리</p> <p>라. 농업기계생산 및 판매업 관리</p> <p>마. 기타 농자재 유통 및 판매업 관리</p> <p>31.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p> <p>가. 농업기계 지원 및 공급</p> <p>나. 농업기계 보급 및 이용율 증대 추진</p> <p>다. 농업기계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p> <p>32. 농축수산업 통계에 관한 업무</p> <p>33. 양정에 관한 업무</p> <p>가. 양곡의 도정 및 가공업·매매업 지도 관리</p> <p>나. 추곡 약정수매등 양곡 수매업무</p> <p>다. 정부대여양곡 관리</p> <p>34. 농축수산업 관련 자생단체 육성 지도</p> <p>35.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업무 추진</p> <p>36. 농어업인 후계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 및 관리</p> <p>37. 전업농 육성 및 선도 농업경영체 육성 지도</p> <p>38.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업무</p> <p>39. 유기·자연농법등 환경농업 업무 추진</p> <p>40.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소관)의 관리</p> <p>가. 농업용시설의 목적외사용 및 용도폐지에 관한 업무</p> <p>41. 가축에 관한 업무</p> <p>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p> <p>나. 축산업, 종계업, 종축업 등 지도 관리</p> <p>다. 공수의 위축</p> <p>라.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신고 수리</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 사료 판매업 신고 및 관련업무</li> <li>바. 가축전산화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무</li> <li>42. 초지 조성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초지조성 전용허가 및 사후관리</li> </ul> </li> <li>43.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축산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등에 관한 업무전반</li> <li>나. 축산물 판매, 보관, 운반업 허가신고수리 및 지도감독</li> </ul> </li> <li>44. 수산업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업무</li> <li>나. 수산제조업 신고수리</li> <li>다. 연안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 신고</li> <li>라. 부정·불법어업 단속</li> </ul> </li> <li>45. 어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어선등록 및 변경 말소업무</li> <li>나. 어선원부 관리 및 발급</li> <li>다. 어선표지판 교부승인</li> <li>라. 어선전조·개조 발주허가</li> <li>마. 범칙어선 행정처분</li> <li>바. 어업 안전조업 지도</li> </ul> </li> <li>4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li> <li>47. 복권업소 지도·단속</li> <li>48.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li> <li>49. 대부업에 관한 사무</li> <li>50.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무 (개정 2011.06.15)</li> <li>51. 담배판매소매업에 관한 사무</li> <li>52. &lt;삭제 2011.06.15&gt;</li> <li>53. 재래시장 활성화사업</li> <li>54. 재래시장인정 등록 및 관리</li> <li>55. 농지일반에 관한 사무</li> <li>56.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li> <li>57.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사무</li> <li>58. 해양수산사업 시험에 관한 사무</li> <li>59.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li> <li>60.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li> <li>61.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li> <li>62.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p>63. 노동대책회의 운영</p> <p>64.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p> <p>65.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p> <p>6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p> <p>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p> <p>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p> <p>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p> <p>라. 입지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p> <p>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p> <p>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p> <p>67.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p> <p>6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p> <p>69.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p> <p>70.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p> <p>71.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p> <p>72. 해외 판로개척 계획수립</p> <p>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p> <p>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p> <p>다. 해외 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p> <p>73. 계량기에 관한 사무</p> <p>74.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사무</p> <p>75.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p> <p>76.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사무</p> <p>77. 영업 관리업에 관한 사무</p> <p>78. 광공업에 관한 사무</p> <p>79.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p> <p>80. 가스 안전점검 사후관리</p> <p>81. 고압가스(판매, 제조, 저장, 충전업, 운반자등록)에 관한 사무</p> <p>8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허가 관련업무</p> <p>83.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용품제조, 충전) 사업에 관한 사무</p> <p>8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p> <p>85.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p> <p>86.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p> <p>87.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 및 사업기금 관련업무</p> <p>88.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에 따른 사후관리 등</p> <p>89.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p>90. 가스안전관리 계도·홍보</p> <p>91.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에 관한 사무</p> <p>92.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에 관한 사무</p> <p>93. 연료수급 및 조정</p> <p>94.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련사무</p> <p>95.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무</p> <p>96.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p> <p>97. 산업단지에 관한 사무</p> <p>98.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p> <p>99.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안전관리</p> <p>100.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p> <p>101.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p> <p>102.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관한 사무</p> <p>103.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신설 2011.06.15)</p> <p>104.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신설 2011.06.15)</p> <p>105.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신설 2011.06.15)</p> <p>106.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신설 2011.06.15)</p> <p>107. 직업안내 사업자와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 (신설 2011.06.15)</p> <p>108. 직업소개소 허가 등 (신설 2011.06.15)</p> <p>109. 취업상담 및 알선(구인구직 창구 운영) (신설 2011.06.15)</p> <p>110. 고용촉진훈련 (신설 2011.06.15)</p> <p>111. 종합실업대책 계획수립 추진(총괄) (신설 2011.06.15)</p> <p>112. 실업대책(일자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신설 2011.06.15)</p> <p>113. 공공근로자 모집 및 관리 (신설 2011.06.15)</p> <p>114. 실직자 구제시책 개발 (신설 2011.06.15)</p> <p>115. 기타 실업관련 민원처리 상담 (신설 2011.06.15)</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li> <li>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의</li> <li>3. 재난관련 위원회 및 각종 규정 제·개정</li> <li>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li> <li>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li> <li>6.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li> <li>7. 재난종합상황실 운영</li> <li>8. 이재민 관련 업무</li> <li>9.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li> <li>10.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li> <li>11.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보고</li> <li>12.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li> <li>13. 민방위 상황실 운영</li> <li>14.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확인</li> <li>15. 충무계획의 지침작성과 조정통제</li> <li>16. 주민신고망 조직운영</li> <li>17. 재해 및 일반구호</li> <li>18. 재해구호물자의 출납보관 관리</li> <li>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li> <li>20.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li> <li>21. 재난관리기금 운용</li> <li>22. 공연행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li> <li>2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li> <li>2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li> <li>25. 민방위 준비명령</li> <li>26. 민방위대 검열</li> <li>27. 민방위 시설물 관리</li> <li>28. 민방위 편성 및 교육 관리</li> <li>29.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li> <li>30. 안전문화운동 전개</li> <li>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보호</li> <li>3. 불우 이웃돕기</li> <li>4. 급여의 실시(생업자금 및 수업료 지원 등)(삭제)</li> <li>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운영관리</li> <li>6. 국가보훈단체(구지부) 보조</li> <li>7. 주민복지 상담</li> <li>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개정)</li> <li>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및 관리(삭제)</li> <li>10. &lt;삭제 2011.06.15&gt;</li> <li>1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및 기금운영 관리</li> <li>12. &lt;삭제 2011.06.15&gt;</li> <li>13. &lt;삭제 2011.06.15&gt;</li> <li>14. &lt;삭제 2011.06.15&gt;</li> <li>15. &lt;삭제 2011.06.15&gt;</li> <li>16. &lt;삭제 2011.06.15&gt;</li> <li>17.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li> <li>18. &lt;삭제 2011.06.15&gt;</li> <li>19. 재향군인회 및 6.25참전전우회에 관한 사항</li> <li>20.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1.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li> <li>2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li> <li>24.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li> <li>25.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li> <li>26. 사회복지 시책홍보·교육</li> <li>27.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 (개정 2011.06.15)</li> <li>28.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li> <li>29. 보건 및 복지서비스(긴급지원 등) 연계업무 (개정 2011.06.15)</li> <li>30. 서비스 실시·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li> <li>31. &lt;삭제 2011.06.15&gt;</li> <li>32.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과	33. 지역특수사업개발·시행계획 수립 34. <삭제 2011.06.15> 35. <삭제 2011.06.15> 36. <삭제 2011.06.15> 37. <삭제 2011.06.15> 38. <삭제 2011.06.15> 39. <삭제 2011.06.15> 40. <삭제 2011.06.15> 41. <삭제 2011.06.15> 42. <삭제 2011.06.15> 43. <삭제 2011.06.15> 44. <삭제 2011.06.15> 45.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시설지원 46.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공고(개정 2011.06.15) 47. 행여자 관리 48.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사회복지과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일반 3. 장애자의 편의시설 설치지도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5.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6.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사업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8. 장애인 일자리 지원 9.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10.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1.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06.15> 15. <삭제 2011.06.15> 16. <삭제 2011.06.15> 17. <삭제 2011.06.15> 18. <삭제 2011.06.15> 19. <삭제 2011.06.15> 20. <삭제 2011.06.15> 21. <삭제 2011.06.15>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22. <삭제 2011.06.15> 23. <삭제 2011.06.15> 24. <삭제 2011.06.15> 25. <삭제 2011.06.15> 26. <삭제 2011.06.15> 27. <삭제 2011.06.15> 28. <삭제 2011.06.15> 29. <삭제 2011.06.15> 30. <삭제 2011.06.15> 31. <삭제 2011.06.15> 32. <삭제 2011.06.15> 33.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34. <삭제 2011.06.15> 35. <삭제 2011.06.15> 36. <삭제 2011.06.15> 37. <삭제 2011.06.15> 38. <삭제 2011.06.15> 39. <삭제 2011.06.15> 40. <삭제 2011.06.15> 41. <삭제 2011.06.15> 42. <삭제 2011.06.15> 43. <삭제 2011.06.15> 44. <삭제 2011.06.15> 45. <삭제 2011.06.15> 46. <삭제 2011.06.15> 47. <삭제 2011.06.15> 48. <삭제 2011.06.15> 49. <삭제 2011.06.15> 50. <삭제 2011.06.15> 51. <삭제 2011.06.15> 52. <삭제 2011.06.15> 53. <삭제 2011.06.15> 54. <삭제 2011.06.15> 55. <삭제 2011.06.15> 56. <삭제 2011.06.15> 57. <삭제 2011.06.15> 58. <삭제 2011.06.15> 59. <삭제 2011.06.15>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lt;삭제 2011.06.15&gt;</li> <li>61. &lt;삭제 2011.06.15&gt;</li> <li>62. &lt;삭제 2011.06.15&gt;</li> <li>63. &lt;삭제 2011.06.15&gt;</li> <li>64. &lt;삭제 2011.06.15&gt;</li> <li>65. 급여의 실시(생업자금 및 수업료 지원 등) (신설 2011.06.15)</li> <li>66. 자활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1.06.15)</li> <li>67. 의료급여 자격관리 (신설 2011.06.15)</li> <li>68. 의료급여기금 관리 (신설 2011.06.15)</li> <li>69.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li> <li>70. 자활지원사업 추진 (신설 2011.06.15)</li> <li>71. 자활사업 관리업 (신설 2011.06.15)</li> <li>7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개정)</li> <li>73. 저소득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개정)</li> <li>7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신설)</li> <li>7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및 관리(신설)</li> <li>76.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신설)</li> <li>77. 장애인 연금 지원(신설)</li> <li>78. 자활기금 관리운영(신설)</li> <li>79. 생업자금 용자대상자 추천 및 관리(신설)</li> <li>80. 저소득가구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추천(신설)</li> <li>81.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신설)</li> </ul>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 (신설 2011.06.15)</li> <li>2.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총괄 (신설 2011.06.15)</li> <li>3.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li> <li>4. 노인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2011.06.15)</li> <li>5.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li> <li>6.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li> <li>7.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신설 2011.06.15)</li> <li>8. 노인복지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1.06.15)</li> <li>9. 노인여가시설 등록 및 관리 (신설 2011.06.15)</li> <li>10. 재가노인복지사업 (신설 2011.06.15)</li> <li>11. 노인일자리아업 실시 및 지원 (신설 2011.06.15)</li> <li>12. 불우노인 지원 및 결연사업 (신설 2011.06.15)</li> <li>13. 노인 여가활동 지원 (신설 2011.06.15)</li> <li>14. 노인건강진단 (신설 2011.06.15)</li> <li>15. 경로사업 실시 지원 (신설 2011.06.15)</li> <li>16.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신설 2011.06.15)</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17.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18.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신설 2011.06.15) 19. 노인복지관 지도감독 (신설 2011.06.15) 20.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11.06.15) 21.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신설 2011.06.15) 22.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신설 2011.06.15) 23. 구립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4. 보육시설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5. 구립 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6.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신설 2011.06.15) 27. 용자보육시설 사후관리 (신설 2011.06.15) 28. 보육종사자 임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9. 보육시설 평가인증홍보 및 사후관리 (신설 2011.06.15) 30.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지도 및 관리 (신설 2011.06.15) 31.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관리 (신설 2011.06.15) 32.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1.06.15) 33.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관리 (신설 2011.06.15) 34.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관리 (신설 2011.06.15) 35.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인력개발 및 교육 (신설 2011.06.15) 36. 여성단체 육성 및 봉사활동 (신설 2011.06.15) 37. 성매매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신설 2011.06.15) 38. 가정폭력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신설 2011.06.15) 39. 성폭력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신설 2011.06.15) 40. 여성상담 및 요보호여성 관리 및 선도 (신설 2011.06.15) 41. 건강가정 생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사항 (신설 2011.06.15) 42.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43. 한부모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신설 2011.06.15) 44.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45. 요보호아동 관리 (신설 2011.06.15) 46.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및 관리 (신설 2011.06.15) 47. 소년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 (신설 2011.06.15) 48.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설 2011.06.15) 49. 기타 여성정책, 아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50.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신설 2011.06.15) 51. 결혼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신설 2011.06.15) 52.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신설 2011.06.15) 53. 여성권익증진사업 (신설 2011.06.15) 54.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원 <sup>26</sup> 및 지도감독 (신설 2011.06.15)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55.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신설 2011.06.15) 56.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신설 2011.06.15) 57.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신설 2011.06.15) 58. 성별영향평가 (신설 2011.06.15) 59.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1.06.15) 60.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11.06.15) 61. 드림스타트 대상자 관리 (신설 2011.06.15) 62. 드림스타트 복지 세부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1.06.15) 63. 여성복지연간계획의 수립(신설) 64. 서구여성발전기금 관리(신설) 65. 서구여성주간행사 추진(신설) 66.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67.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68.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69. 입양아동 등록 및 지원(신설) 70.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신설) 71. 가정위탁센터 및 아동복지 시설 입소(신설) 63.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개정(신설) 64.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신설)
문화관광체육과	1.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2. 문화재 보존관리 및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3. 지정문화재 자료보존 및 관리 4.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5.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6.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7. 문화예술용품의 생산 권장 8. 문화예술진흥대회 개최 운영 9.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 운영 10. 문화회관·검단복지회관 지도감독 11. 관할 구역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2. 서구합창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4.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5.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16. 관광음식점에 관한 등록 및 지도감독 17.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관한 등록 및 지도감독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문화관광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공연장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li> <li>19.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li> <li>20. 종교행정에 관한 사항</li> <li>21. 시·구민생활체육대회 추진</li> <li>22. 직장체육활동의 지원</li> <li>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신고처리등 지도감독</li> <li>24.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li> <li>25.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li> <li>26. &lt;삭제 2011.06.15&gt;</li> <li>27.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li> <li>28. 건전생활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li> <li>2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li> <li>30. 기타 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li> <li>31.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관리 및 운영 (신설 2011.06.15)</li> <li>32. 마실거리 야외무대 관리 (신설 2011.06.15)</li> </ol>
환경보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li> <li>2.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조성</li> <li>3.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li> <li>4.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li> <li>5.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li> <li>6. 각종 중규모사업의 환경성 검토</li> <li>7. 대기오염확산 모델링 구축</li> <li>8. 환경분쟁조정 알선</li> <li>9.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li> <li>10.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li> <li>11. 환경보전 대구민 홍보</li> <li>12. 학교방음벽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조사</li> <li>13. 오존경보제 실시를 위한 상황 운영</li> <li>14. 유독물 영업자 등록(제조, 사용, 보관, 저장, 판매)</li> <li>15.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li> <li>1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li> <li>17. 환경관련 진정, 민원처리</li> <li>18. 청정연료 대체 업무</li> <li>19. 배출업소 전산망 구축 및 운영</li> <li>20. 유독물관리자(양성자) 교육</li> <li>21.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전수조사</li> <li>22. 토양오염 측정망 관리 운영</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환경보건과	23. 생활소음 관리 24. 보안업무(비밀문서 관리) 25.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26.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2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28. 유독물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29.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30. 하천오염행위 단속 3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32. 환경 공익근무요원 관리 33. 굴뚝먼지 측정업무 3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35. 악취감시 상황실 운영 36. 오염도 측정 자료 관리 37.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38.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39. 환경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 40.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41. 비산먼지 억제 증장기 대책 및 시행 42. 해양오염 방지관리 43. 악취발생물질 지도단속 44. 수질·대기·환경오염자동측정망(TMS)운영 45.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46.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 수리 47. 특정시설 지도점검 48. 환경친화적 기업 지정관리 49.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 50. 하천 오염도 검사 51.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52. 중수도에 관한 사항 53. 저수조에 관한 사항 54.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55. 환경사범 수사 업무 5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57. 자동차배출가스 정밀조사 58.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59. 자동차공회전 단속 60. ~ 76. <삭제 2010.10.06> 77. 자연보호운동 계획 및 조정 78. 자연보호시설물 확충 및 관리 79. 자연보호단체 관리 80. 자연정화활동 추진 및 계도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위 생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수립 시행</li> <li>2.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허가(변경) 및 신고(변경)수리</li> <li>3.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li> <li>4.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li> <li>5.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li> <li>6.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li> <li>7. 공중이용시설의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li> <li>8. 위생관련 영업신고(변경)수리 및 지도감독</li> <li>9. 위생용품 제조업 및 처리업 신고(변경)수리 지도감독</li> <li>10. 먹는샘물공동시설(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li> <li>11. 위생관리담당자 지정(해제)신고 및 지도관리</li> <li>12.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li> <li>13.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허가(변경) 및 신고(변경)수리</li> <li>14. 식품판매업 신고(변경) 수리</li> <li>15. 식품위생접객업소 및 소분판매업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li> <li>16. 국민 영양조사 및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li> <li>17.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li> <li>18. 식품제조업소 허가(변경) 및 지도관리</li> <li>19.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휴업·폐업신고 수리</li> <li>20. 식품용기포장지 제조업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li> <li>21. 조리사 면허증 발급</li> <li>22. 집단급식소 신고수리 및 관리</li> <li>23. 자동판매기 등 지도감독</li> <li>24.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도감독</li> <li>25.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26. 퇴폐·변태·사행위등 위반업소 지도단속</li> <li>27. 영업시간 준수여부 지도단속</li> <li>28. 위생접객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li> <li>29. 감시 및 단속과 관련된 신고진정등 민원처리</li> <li>30. 부정불량식품과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실시</li> <li>31. 무허가업소의 단속 및 조치</li> <li>32.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처리</li> <li>33.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li> <li>34.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li> <li>35. 위생상의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ol>
청소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li> <li>3.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감독</li> <li>4. 환경미화원 관리</li> <li>5. 도로청소 및 청소차량 관리</li> <li>6. 청소장비 개선 및 관리</li> <li>7. 쓰레기종량제 추진</li> <li>8.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계약</li> <li>9. 생활쓰레기 수집·수수료 관리</li> <li>10. 재활용품의 회수처리 및 실적관리</li> <li>11. 재활용선별보관장 및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li> <li>12.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사업계봉투 관련업무</li> <li>13. 재활용 촉진 및 관련업무</li> <li>1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업무</li> <li>1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li> <li>1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li> <li>17.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li> <li>18.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협의 및 준공검사</li> <li>19.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감독</li> <li>20. 개방화장실 지도 점검</li> <li>21. 재래식 화장실 개량 추진</li> <li>2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li> <li>23. 의류 수거함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4.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li> <li>25.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관련업무</li> <li>26.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관련업무</li> <li>27. 감량의무사업장 관리</li> <li>28.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변경) (신설 2010.10.06)</li> <li>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변경) (신설 2010.10.06)</li> <li>3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및 처리실적보고 (신설 2010.10.06)</li> <li>3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관련 업무 (신설 2010.10.06)</li> <li>32. 폐기물재활용신고 (신설 2010.10.06)</li> <li>3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고 (신설 2010.10.06)</li> <li>3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 (신설 2010.10.06)</li> <li>35. 지정(감염성)폐기물 처리증명 확인(변경포함) (신설 2010.10.06)</li> <li>36. 폐기물인계·인수서 관리 (신설 2010.10.06)</li> <li>37. 폐기물 연간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0.10.06)</li> <li>38. 방치폐기물, 순환골재 관련업무 (신설 2010.10.06)</li> <li>39.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행정처분 (신설 2010.10.06)</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4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업체 지도·점검 (신설 2010.10.06) 41. 사업장 일반 및 건설폐기물관련 각종 민원처리 (신설 2010.10.06) 4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 관련 업무 (신설 2010.10.06) 4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신설 2010.10.06) 44.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신설 2010.10.06)
건설과	1. 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 3.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기본자료조사 4.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 5. 도로하천 수익자부담금 징수 6.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7. 국공유재산(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점용 및 도로공사물제거 설치허가 나.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8.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장비업체)등에 관한사항 9. (삭제 2010. 4. 9) 10.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1. 지하도점 상가유지관리 12. 도로, 하천사용료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13.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지정 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 14. 구도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점용료징수(단, 2개구 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점용면적이 많은 구에서 타구와 협의 처리) 15. 하수도 및 지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16. 행정재산(도로, 구거)의 용도 폐지 17. 도시계획사업(공원제외)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8.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20.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21.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22.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3.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24. 도로관리계획 수립 시행 (도로폭 20미터 이하) 25.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26.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시행 및 지도 (도로폭 20미터 이하) 27.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건설과	<p>28.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와 시공감독 (도로폭 20미터 이하)</p> <p>29.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p> <p>30.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기 및 변경</p> <p>31. 도로폭 20미터 이하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p> <p>32. 사도 개설허가</p> <p>33.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p> <p>34. 하수도 사용료 집계</p> <p>35. 지하수 사용량 검침</p> <p>36.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p> <p>37. 하수도 사용계량기 설치 및 교체</p> <p>38. 하수도 종별 책정 및 변경</p> <p>39. 지하수 수질검사</p> <p>40.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무</p> <p>41.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무</p> <p>42. 하천유지관리</p> <p>43.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p> <p>44.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선정</p> <p>45. 소하천 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 운영</p> <p>46. 하천감시</p> <p>4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p> <p>48. 공공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p> <p>49.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p> <p>50. 구청장 포괄사업비 관리</p> <p>51. 굴삭기 유지관리</p> <p>52.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p> <p>53.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p> <p>54.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관리</p> <p>55.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p> <p>56. 콘크리트 포장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p> <p>57. 20미터 이하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도로구역 결정</p> <p>나.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다.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p> <p>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마. 설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p>건 설 과</p>	<p>바.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  사.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아. 접도구역의 지정 등  자. 비 관리청 사업의 지도감독</p> <p>58. 도로경관 조성사업  59. 도로손해자 부담금 징수  60. 가로등, 보안등, 육교등, 터널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61. 구청사 전기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  62. 지하철도 및 지하도 전기시설 유지관리  63. 주택건설촉진법중 전기분야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64. 자가용 전기 공작물 및 전기에 관한 사항  65.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사항</p>
<p>건 축 과</p>	<p>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2. 건축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등에 대한 사무  4. 항측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6. 건축시공 및 지도감독  7. 건축물의 유지관리  8. 건축사 지도감독  9.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10.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11. 가설건축물 허가 및 관리  12. 건축통계 및 자료관리 보관  13.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14.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15. 건축신고의 수리  1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17.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18. 신고사항의 변경수리  19. 신고예상 건축물(또는 공작물)의 건축  가. 착공신고의 수리  20.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21.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2.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가. 사업승인</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착공신고</li> <li>다. 사용검사</li> <li>라. 경미한 변경처리 및 사업계획 변경</li> <li>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li> <li>바. 공사장 안전점검</li> <li>사. 임시사용 승인</li> <li>아. 감정평가 등록 및 의뢰</li> <li>자.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li> <li>차.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li> <li><b>23. 공동주택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li> <li>나. 공동주택 하자보수</li> <li>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li> <li>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li> <li>마.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li> <li>바. 노후·불량주택(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li> <li>사. 시특별대상건축물 안전점검</li> <li>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li> <li>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li>차. 주택관리업등록(변경)</li> </ul> </li> <li><b>24.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설립인가</li> <li>나. 조합신고</li> </ul> </li> <li><b>25. 임대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업자 등록(변경)</li> <li>나. 임대조건 신고</li> <li>다.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li> </ul> </li> <li><b>26.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전환, 합병, 말소, 정정)</b></li> <li><b>27.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b></li> <li><b>28. 건축물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b></li> <li><b>29. 재건축에 관한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li> <li>나. 사업시행인가</li> <li>다. 착공신고</li> <li>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li> <li>마. 공사장 안전점검</li> <li>바. 사용검사</li> </ul> </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p>건축과</p>	<p>사. 임시사용승인  아.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  자.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p> <p>30. 구청사 신·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31. 동청사 신·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32. 공공건축물 신·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33. 구청사 시설물 보수관리(조경분야 제외)  34. 구청사 시설물 관리용 자재 기구의 출납 보관  35. 구유청사 및 시설물 영선관리(단,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제외)  36. 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 및 청소 지도감독  37. 공공건축물 신·증축, 대수선 설계 및 시공감독(사업계획, 예산확보, 토지매입절차 제외)  38. 공공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 사업예산 지출관리  39.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사항  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나.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라. 환지예정지증명원 발급  마.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사. 건축물대장 발급</p> <p>4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06)</p>
<p>도시개발과</p>	<p>1. 도시개발사업 예산 및 특별회계관리 (개정 2011.06.15)  2.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개정 2011.06.15)  3.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징·교부 (개정 2011.06.15)  4. 도시개발사업 토지등기 (개정 2011.06.15)  5.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및 매각 (개정 2011.06.15)  6. 토지의 굴착분에 대한 정리 조치  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개정 2011.06.15)  8.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요청·실시계획인가 신청 (개정 2011.06.15)  9.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조성공사 시행 (개정 2011.06.15)  10.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및 처분 (개정 2011.06.15)  11. 환지예정지 관리 및 사용허가  12.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조정  13.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도시개발과	15.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6.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7. 미협외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8.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9.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 20.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에 관한 사무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 재건축사업 제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에 관한 사무 2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2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26.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무 27.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녹지경관과	1. 조림 및 육림 2. 산림보호 3. 임정 및 임업금융 4. 도시녹화 5. 임산물가공 이용 6. 종묘 판매업 등록 7. 임야매매 증명 8. 산지오염 방지 9. 산불예방 및 진화 10. 산림내 건조물 관리 11. 산림 병충해 방지 12. 산사태 예방·복구 13.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14. 공유(시·구유)재산중 임야의 관리 15. 사방 16. 가로수 식재 및 관리 17. 산지이용 18. 산림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외) 19. 민유림 별채 (도시계획외) 20. 임산물 굴 채취 (도시계획외) 21. 임업통계 22. 보안문서 생산관리 (충무계획)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녹지경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 공동주택 조경협회</li> <li>24. 산림 공익근무요원 지도관리</li> <li>25. 약수터의 주변(시설물등) 정비</li> <li>26.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li> <li>27. 도시공원 조성</li> <li>28.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li> <li>29. 녹지조성</li> <li>30. 녹지시설 유지관리 (구청사 조경분야 포함)</li> <li>31.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li> <li>32.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부과</li> <li>33. 공원·녹지감시 공익요원 지도관리</li> <li>34. 도시계획사업(공원)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li> <li>35.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6.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li> <li>3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li> <li>38.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li> <li>39.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li> <li>40.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li> <li>41. 시설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li> <li>42.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li> <li>43.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실시 및 위탁</li> <li>44.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li> <li>45. 광고물 과태료의 부과</li> <li>46. 옥외광고물업의 지도·관리</li> <li>47.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li> <li>48. 광고물의 사후관리</li> <li>49. 도시개성 창조사업(CIP) 심별마크, 로고체, 전용색상등 상징물 제정사용</li> <li>5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신설)</li> <li>5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법적이행사항(신설) (보험가입, 안전점검,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li> </ul>
토지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li> <li>2. 과 공인관리</li> <li>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li> <li>4.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li> <li>5.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li> <li>6. 개발부담금 몰납허가</li> <li>7. 개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토지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li> <li>9.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li> <li>10. 개발비용 처리 통보</li> <li>11. 부동산중개업허가 및 허가갱신</li> <li>12. 부동산중개업 기재사항변경신고</li> <li>13.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조설정 신고</li> <li>14. 부동산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li> <li>15.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 신고</li> <li>16.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재교부 신고</li> <li>17. 부동산투기단속에 관한 업무</li> <li>18.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li> <li>19.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조사</li> <li>20.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li> <li>2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li> <li>22.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li> <li>2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li> <li>24. 과 예산, 회계 업무</li> <li>25.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li> <li>26.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li> <li>27. 지적측량 기초점(도근점) 보존 및 관리</li> <li>28. 국가기준점 보존 및 관리</li> <li>29. 지적도근점 표석대장 정리</li> <li>30. 토지분할 허가</li> <li>31. 토지이동처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li> <li>3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li> <li>33. 토지이동지 일제조사</li> <li>34.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li> <li>35. 지적측량 성과검사(개정)</li> <li>36. 지적통계</li> <li>37. 지적측량장비 관리(개정)</li> <li>38. 축척 변경, 행정구역 변경업무</li> <li>39.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불부합사항 조사, 정리</li> <li>4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정리</li> <li>41. 토지이동시 지적전산정리업무</li> <li>42.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삭제)</li> <li>43.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업무(삭제)</li> <li>44.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관리 및 정리</li> <li>45.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토지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6.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신고</li> <li>47. 토지기록전산시스템 관리</li> <li>48. 지적전산논리 오류정비</li> <li>49. 지적전산 오기정정</li> <li>50.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업무</li> <li>51. 국토정보센터 자료이용(조상땅 찾기)업무</li> <li>52. KLIS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li> <li>53. KLIS 국가정보체계등록자료 관리</li> <li>54. 지적행정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li> <li>55. 지적전산 정보관리</li> <li>56.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li> <li>나.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li> <li>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li> <li>라. 환지에정지증명원 발급</li> <li>마.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li> <li>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li> <li>사. 건축물대장 발급</li> </ul> </li> <li>57. 도시계획관련 제증명발급용 도면정리</li> <li>58.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li> <li>59. 토지취득의 이용목적변경승인 업무</li> <li>60. 토지이용사후 실태조사</li> <li>61. 국토계획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li> <li>62. 국토계획법 위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li> <li>63. 소유권정리 업무</li> <li>64. 국가소송수행</li> <li>65. 법인가인 사단, 재단 등록</li> <li>66.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li> <li>67.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li> <li>6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li> <li>69. 주택거래신고 업무</li> <li>70. 부동산 등기과태료 부과·징수</li> <li>71. 지가산정 종합계획 수립</li> <li>72.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관리</li> <li>73.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토지정보과	<p><b>74.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삭제)</b></p> <p>75. 개별지가 열람 및 통보</p> <p>76. 공시지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p> <p>77.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p> <p>78. 지가조사반 편성운영</p> <p>79. 주민의견 접수 처리</p> <p>80. 의견제출지가 검증</p> <p>81.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p> <p>82. 이의신청지가 검증</p> <p>83.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p> <p>84. 국토해양부 지가 확인 요청</p> <p>85. 공시지가 결정</p> <p>86. 행정소송 수행</p> <p>8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p> <p>88.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p> <p>89.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p> <p>90.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p> <p>91. 기반시설부담금 물납허가</p> <p>92.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p> <p>93.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p> <p>94.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관리·교부</p> <p>95. 기반시설부담구역 분석 지정·고시</p> <p>96. 기반시설설치계획 작성</p> <p>97.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p> <p>98. 기반시설설치 비용산정</p> <p>99.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p> <p>100.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업무</p> <p>101. 도로명 주소 홍보</p> <p>102. 새주소위원회 운영</p> <p>103.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보수</p> <p>104. 도로명법 시행 전 추진사업 정비</p> <p>105. 도로명 주소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비</p> <p>106. 전국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 민원처리</p> <p>107. 도로명 주소 예산업무</p> <p>108. 과내 체납액 정리</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토지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9. 공간정보(GIS) 총괄 운영(신설)</li> <li>110. 공간정보 운영 종합계획 수립(신설)</li> <li>111. 국가공간정보체계 DB 구축·운영(신설)</li> <li>11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DB 구축·운영(신설)</li> <li>113. 국토정보센터 DB 구축·운영(신설)</li> <li>114. 건물통합정보 통합 DB 구축·운영(신설)</li> <li>115. 3차원 공간정보사업 추진(신설)</li> <li>116. 3차원 공간정보 실사모델링 추진(신설)</li> <li>117. 생활지리정보 DB 구축(신설)</li> <li>118. 항공영상 웹서비스 운영(신설)</li> <li>119. Web 기반 항공사진 입체판독(신설)</li> <li>120. 고해상도 항공사진 자료 제공(신설)</li> <li>121. 공간정보 행정주제도 제작·지원(신설)</li> <li>122. 수치지형도 수치갱신 체계 지원(신설)</li> <li>123. 공간정보 서버 운영(신설)</li> <li>124.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신설)</li> <li>125. 지형지물 변동조사(신설)</li> </ul>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li> <li>2. 교통안전 시책추진</li> <li>3.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li> <li>4. 교통공안협의</li> <li>5. 교통체계관리(T.S.M)지역사업 추진</li> <li>6.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li> <li>7. 교통영향평가 심의진달</li> <li>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li> <li>9.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운영</li> <li>10.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폐지</li> <li>1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이의신청 처리</li> <li>12. 주·정차 단속 및 이의신청 처리</li> <li>13. 주·정차 관련시설물(주차안내표지, 주정차표지등) 설치 및 관리</li> <li>14.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15. 민영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li> <li>16. 주차장관리 및 설치조례 제정, 개정, 폐지</li> <li>17. 충무계획(교통실시) 수립 및 시행(삭제)</li> <li>18. 차량부제운행 및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실시</li> <li>19. 위탁 공영주차장 지도 감독</li> <li>20. 스쿨존 시설 및 운영</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21.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22.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 23.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감독 24. 거주지 우선 주차제 운영 25. 승용차 함께타기 시책 추진 26.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27.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지정 및 표지판 설치 (신설 2010.10.06)
교통민원과	1.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택시, 버스, 화물) 2. 자동차정류장 설치에 관한 사항 3. 총무계획(교통실시) 수립 및 시행 4.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창고업(화물유통촉진법)에 관한 사무 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 8.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10.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11.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확인 관리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 포함) 주기적 신고 처리 13.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14. 화물자동차 유류 복지카드 승인 처리 15. 사업용 운수사업자(버스, 택시, 화물) 전국 전산망 등재 16.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화물터미널 설치계획 추진 17. 자동차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1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19.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령 등 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무허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 자동차의 개선명령 22. 자동차정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23. 차고시설 신고업무 24. 사업장 이전시설 변경등록업무 2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 26.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정처분 27.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28.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시요구등 책임보험에 관한 업무 29. 자동차 책임보험등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 증명서류의 제출명령 30.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사항 조회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교통민원과	3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32. 이륜차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34.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35. 법령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36. 무적, 무등록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신규, 부활 등록 38. 자동차 이전, 단순 변경등록 39.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승인 4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41. 계속검사 경과차량 검사명령 42. 법규위반차량 고발조치 43. 자동차관련(등록,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 44. 자동차 제증명(등록원부, 말소) 발급 45. 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회수 46.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47.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 48. 자가용 사용신고 처리 49. 자동차 저당, 압류 등록 및 해제 50. 자동차 봉인의 관리 51. 자동차 검사, 점검 연기신청 처리 52. 자동차관련 승인대장 관리 53. 자동차 말소등록 54. 자동차 등록증(봉인) 재교부 55. 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56. 건설기계 관련 업무 (신설 2010. 4. 9) 57. 저속전기자동차 등록 (신설 2010.10.06) 58. 저속전기자동차 운행(변경)허가·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신설 2010.10.06) 59. <b>충무계획(교통실시) 수립 및 시행(신설)</b>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구민분위 행정을 구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례안 제2조)
  - 803명 ⇒ 827명 (증 24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조례안 별표 2)
  - 기능직 및 별정직 지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조례안 별표 3)
  - 일반직 : 734명 ⇒ 758명(증 24명)
  - 5급 : 49명 ⇒ 50명(증 1명)
  - 6급이하 : 679명 ⇒ 702명(증 23명)

##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규칙안 별표)

- 분 청 : 517명 ⇒ 534명(증 17명)
- 보건소 : 44명 ⇒ 45명(증 1명)
- 동 : 165명 ⇒ 171명(증 6명)

※ 추가소요 인건비 : 992,170천원 (내역 별첨)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40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03”을 “827”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85”를 “809”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2% 이내	31% 이내	6%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47% 이내	36% 이내	6%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34% 이내	-	34% 이내	-	3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b>827</b>	-				
정무직 계	<b>1</b>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b>758</b>	-				
3급	1	1				
4급	5	3	1	1		
5급	<b>50</b>	<b>23</b>	2	6	1	18
6급 이하 계	<b>702</b>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b>1</b>	-				
6급 상당 이하 계	<b>2</b>	-				
기능직 계	65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 건 지 소	출장소	동
<b>총 계</b>		<b>827</b>	<b>534</b>	<b>18</b>	<b>45</b>	<b>16</b>	<b>43</b>	<b>171</b>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758</b>	<b>498</b>	<b>12</b>	<b>42</b>	<b>16</b>	<b>38</b>	<b>152</b>
<b>3급 소계</b>		<b>1</b>	<b>1</b>					
지방부이사관		1	1					
<b>4급 소계</b>		<b>5</b>	<b>3</b>	<b>1</b>	<b>1</b>	<b>0</b>	<b>0</b>	<b>0</b>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b>5급 소계</b>		<b>50</b>	<b>23</b>	<b>2</b>	<b>5</b>	<b>1</b>	<b>1</b>	<b>18</b>
지방행정사무관		28	13	2				13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약무사무관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b>6급 소계</b>		<b>166</b>	<b>127</b>	<b>3</b>	<b>7</b>	<b>3</b>	<b>8</b>	<b>18</b>
지방행정주사		83	63	3			1	16
지방세무주사		5	5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사회복지주사		6	6					
지방공업주사		3	3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약무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2			2			
지방환경주사	5	5					
지방시설주사	14	12				2	
지방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3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8	8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통신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2	2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간호·의료기술·약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b>7급 소계</b>	<b>241</b>	<b>166</b>	<b>3</b>	<b>15</b>	<b>6</b>	<b>16</b>	<b>35</b>
지방행정주사보	95	57	3			1	34
지방세무주사보	27	22				5	
지방전산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6	16					
지방공업주사보	9	8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녹지주사보	4	4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3	7		4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5			4	1		
지방간호주사보	6			5	1		
지방환경주사보	8	8					
지방시설주사보	35	30				5	
지방통신주사보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6					

지방행정·농업주사보	4					3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2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b>8급 소계</b>	<b>229</b>	<b>148</b>	<b>2</b>	<b>13</b>	<b>5</b>	<b>12</b>	<b>49</b>
지방행정서기	105	65	2	1			37
지방세무서기	11	8				3	
지방전산서기	5	5					
지방사회복지서기	22	12					10
지방공업서기	5	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4	4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서기	13	9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2			1	1		
지방간호서기	8			5	3		
지방환경서기	10	10					
지방시설서기	31	25				6	
지방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1				1		
지방환경·공업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b>9급 소계</b>	<b>66</b>	<b>30</b>	<b>1</b>	<b>1</b>	<b>1</b>	<b>1</b>	<b>32</b>
지방행정서기보	37	14	1				22
지방세무서기보	3	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3	2		1			10
지방공업서기보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7	7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b>별정직 계</b>	<b>3</b>	<b>3</b>	<b>0</b>	<b>0</b>	<b>0</b>	<b>0</b>	<b>0</b>
<b>5급상당 소계</b>	<b>1</b>	<b>1</b>	<b>0</b>			<b>0</b>	<b>0</b>

일반비서	1	1					
<b>7급상당 소계</b>	<b>1</b>	<b>1</b>	<b>0</b>			<b>0</b>	<b>0</b>
일반비서	1	1					
<b>9급상당 소계</b>	<b>1</b>	<b>1</b>					
일반비서	1	1					
<b>기능직 계</b>	<b>65</b>	<b>32</b>	<b>6</b>	<b>3</b>	<b>0</b>	<b>5</b>	<b>19</b>
<b>6급 소계</b>	<b>7</b>	<b>7</b>	<b>0</b>	<b>0</b>	<b>0</b>	<b>0</b>	<b>0</b>
지방통신원	1	1					
지방전기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2	2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2	2					
<b>7급 소계</b>	<b>30</b>	<b>10</b>	<b>4</b>	<b>1</b>	<b>0</b>	<b>4</b>	<b>11</b>
지방교환원	1	1					
지방전기원	2	1				1	
지방기계원	2	2					
지방운전원	15	2	1	1		1	10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10	4	3			2	1
<b>8급 소계</b>	<b>23</b>	<b>11</b>	<b>2</b>	<b>2</b>	<b>0</b>	<b>1</b>	<b>7</b>
지방교환원	1	1					
지방기계원	1	1					
지방운전원	16	6	1	1		1	7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5	3	1	1		0	
<b>9급 소계</b>	<b>5</b>	<b>4</b>	<b>0</b>	<b>0</b>	<b>0</b>	<b>0</b>	<b>1</b>
지방운전원	2	1					1
지방조무원·지방사무원	3	3				0	

[붙임 5]

##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992,170,160							
1. 인건비	908,031,600							
가. 기본급	714,700,800	○ 구청장(연봉제)	79,956,000					
		○ 부구청장(연봉제)	76,700,000					
		○ 4급(연봉제)	70,166,000					
		○ 5급(25호봉)	3,556,000	2		12	85,344,000	
		○ 6급(20호봉)	2,883,000	7		12	242,172,000	
		○ 7급(10호봉)	2,193,000	10		12	263,160,000	
		○ 8급(6호봉)	1,588,000	3		12	57,168,000	
		○ 9급(4호봉)	1,302,000	3		12	46,872,000	
		○ 기능6급(23호봉)	3,009,600			12		
		○ 기능7급(21호봉)	2,654,400	2		12	63,705,600	
		○ 기능8급(19호봉)	1,821,700	-2		12	-43,720,800	
		○ 기능9급(17호봉)	1,581,100			12		
나. 상여금	53,602,560	○ 정근수당	714,700,800		0.08	2	53,602,560	90%평균
다. 정액수당	139,728,240							
1)가족수당	10,944,000	○ 배우자	40,000	15	0.78	12	5,616,000	
		○ 존비속	20,000	15	1.48	12	5,328,000	
2)자녀학비수당	1,514,160	○ 중학교	54,000	4	0.19	4	164,160	
		○ 고등학교	450,000	5	0.15	4	1,350,000	
3)정근수당가산금	18,360,000	○ 25년 이상	130,000			12		
		○ 20년~25년미만	110,000	3		12	3,960,000	
		○ 15년~20년미만	80,000	4		12	3,840,000	
		○ 10년~15년미만	60,000	3		12	2,160,000	
		○ 5년~10년미만	50,000	14		12	8,400,000	
4) 정액급식비	37,440,000	○ 일반직	130,000	24		12	37,440,000	
5) 명절휴가비	71,470,080	○ 명절휴가	714,700,800		0.05	2	71,470,080	
2. 물건비	45,420,000							
가.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000	○ 4급	350,000			12		
		○ 5급	100,000	1		12	1,200,000	

(단위 : 원, 명, 월)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 6급	50,000			12		
나. 직급보조비	44,220,000	○ 4급	400,000			12		
		○ 5급	250,000	2		12	6,000,000	
		○ 6급	155,000	7		12	13,020,000	
		○ 7급	140,000	10		12	16,800,000	
		○ 8급	105,000	3		12	3,780,000	
		○ 9급	105,000	3		12	3,780,000	
		○ 기능6급	155,000			12		
		○ 기능7급	140,000	2		12	3,360,000	
		○ 기능8급	105,000	-2		12	-2,520,000	
		○ 기능9급	105,000			12		
3. 이전경비	38,718,560							
가. 성과상여급	38,718,560	○ 5급	2,581,400	2	0.80	1	4,130,240	
		○ 6급	2,210,900	7	0.80	1	12,381,040	
		○ 7급	1,862,700	10	0.80	1	14,901,600	
		○ 8급	1,537,000	3	0.80	1	3,688,800	
		○ 9급	1,289,900	3	0.80	1	3,095,760	
		○ 기능6급	2,210,900		0.80	1		
		○ 기능7급	1,862,700	2	0.80	1	2,980,320	
		○ 기능8급	1,537,000	-2	0.80	1	-2,459,200	
		○ 기능9급	1,289,900		0.80	1		

주1)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급, 정근수당가산급, 명절휴가비,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

2)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

3)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1. 2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출장소장에게 위임(재위임) 하는 사항 중 공중위생영업(2종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업무와 승강기 안전관리, 계량기 관리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여 민원편의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조례안 별표 3)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및 폐업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
- 출장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규칙안 별표 3)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40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화관광 체육과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다.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동법 제2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동법 제24조 - 동법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6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라.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 동법 제61조, 제6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동법 제64조 - 동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 및 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 동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동법 제30조 - 동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 공연법 제9조 - 동법 제33조, 제34조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동조례 제21조 - 동조례 제22조 - 동조례 제23조	
재무과	1	구유 잡종재산의 관리 가. 실패조사 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다. 미수액 체납관리 라. 기타전산입력 처리등	- 지방재정법 제73조	
	2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동조례 제17조 - 동조례 제18조	
세무과	1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 지방세법 제64조	
	2	소유사실 확인원 발급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3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법 제3조, 제38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정 복지과	1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 등록현황 관리 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동법 제27조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설치 등록 나. 경로당 변경, 휴·폐지 다. 경로당 운영지도	-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사항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나.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다. 무연분묘의 개장 및 처리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등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 동법 제13조 내지 제22조 - 동법 제23조 및 제24조 - 동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실과별	번호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위생과	1.	<p>공중위생영업(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 및 폐업</p> <p>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p> <p>다. 공중위생영업소지도단속</p> <p>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p> <p>- 같은 법 제3조의2</p> <p>-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p> <p>-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p>	
	2	<p>식품위생접객업(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영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p> <p>나. 영업의 승계신고</p> <p>다. 지도단속</p> <p>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 식품위생법 제22조</p> <p>- 동법 제25조</p> <p>- 동법 제17조</p> <p>- 동법 제55조 내지 제65조, 제74조 내지 제80조</p>	
청소행정과	1	<p>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p> <p>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p> <p>- 동법 제39조</p> <p>- 동법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p> <p>- 기타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p>	
	2	<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p> <p>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 19조, 제34조</p> <p>- 동법 시행규칙 제9조</p> <p>- 동법 제34조</p> <p>- 동법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6조</p> <p>-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지원과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통지서 발급	- 농지법 제10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	- 농지법 제51조,제52조	
	4	일반소유 상환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발급	- 농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 제19조제1항	
	6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7	농지검사 및 조사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8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제1항	
	9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	
경제지원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 제9조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승인 및 변경승인 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 신고 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 제13조, 제20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4조의3 - 동법 제14조의3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동법 제15조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부분등록 나. 건축물 등록 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동법 제16조 - 동법 제16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5	공장이전의 확인	- 동법 제21조	
	6	기존공장폐쇄 확인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설,증설 승인 및 변경승인 나. 완료(변경완료) 신고	- 동법 제28조의2 - 동법 제28조의2	
	8	공장설립대장 관리	-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0조제4항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다. 공장의 등록취소	- 동법 제13조의5 - 동법 제14조의4 - 동법 제17조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동법 제5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축과	1 2 3 4 5 6 7 8 9	<p>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포함)등</p> <p>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p> <p>동당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p> <p>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사항변경 포함)신고의 수리</p> <p>가설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및 관리</p> <p>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p> <p>건축(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착공신고의 수리</p> <p>나. 사용승인서 교부</p> <p>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p> <p>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p>	<p>- 건축법 제69조, 제77조의2 내지81조</p> <p>- 건축법 제82조, 제83조</p> <p>- 건축법 제8조, 제10조</p> <p>- 건축법 제9조, 제10조, 제14조</p> <p>- 건축법 제15조제1항, 제2항</p> <p>- 건축법 제72조</p> <p>- 건축법 제16조</p> <p>- 동법 제18조</p> <p>- 건축법 제27조</p> <p>- 건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p>	
녹지경관과	1	<p>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p> <p>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p> <p>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p> <p>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p> <p>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p> <p>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p> <p>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p> <p>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p> <p>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p> <p>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p>	<p>-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p> <p>-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p> <p>-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p> <p>-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9조</p> <p>- 동법 제10조</p> <p>-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p> <p>- 동법 제13조</p> <p>- 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p> <p>- 동법 제17조</p> <p>- 동법 제20조</p> <p>- 동법 제20조의2</p>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설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가정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경제지원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동법 제28조 - 동법 제21조 -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38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6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나.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 또는 수입의 신고 다.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라. 계량기 자체수리 인정 마. 실량표시 상품의 검사 바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단, 30톤이상 전기식저울 및 눈새김 탱크로리 정기검사는 제외) 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8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 도로법 제40조 -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  - 동법 제50조 - 동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 동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 - 동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지방2급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작물 관계제외) 가. 권리·의무의 승계등의 신고 나.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동법 제50조 - 동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 하천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동법 제64조	
	3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폭원에 관계없이 도로에 관한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4	다음의 사항 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 도로법 제24조 - 사도법 제4조	
	5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6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하수도법 제20조 - 동법 제37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23호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용 비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1매당) : 62원</li> <li>○ A4라벨용지(1매당) :187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제공 = (450원×CD개수)+(25원×면수)</li> </ul>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131호

## 주민등록일체정리실시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주민등록 일체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3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신고기간 : 2012. 1. 30 ~ 3. 20 【51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